

관련법규 제·개정 현황

1.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중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1999-32호 '99. 6. 21)

- 관보 제14234호 -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45. 올레오레진캡시컴의 사용기준에 어폐류 중 경육을 포함, 과실을 과실류로 하고 해조류를 추가한다.
- 102. 향신료 올레오레진류의 사용기준에 “식초”를 추가한다.
- 113. 오징어먹물색소의 사용기준에 “해조류”를 추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 1999-33호 '99. 6. 12)

- 관보 제14234호 -

제3조 5호 및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냉동식품 중 기타 빵 및 떡류·면류·일반가공식품중 기타 가공품
 - 6. 빙과류
- 별지 제2호서식증 Ⅱ. 식품별 평가사항 4. 다음에 5. 냉동식품 6. 빙과류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1의 HACCP 적용품목 표시부착을 삭제하고 별표1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생략(문의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과(380-1726~27)로 문의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HACCP적용품목(제18조제2호 관련)



1도칼라



포지티브



네가티브

1. 기본칼라(Main Color)

PANTONE Orange 191C
Process Color M00%+Y100%

PANTONE Yellow 109C
Process Color M10%+Y100%

2. 보조칼라(Sub Color) - 가능한 기본칼라를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보조칼라 사용



PANTONE Red 186C
Process Color M100%+Y100%



PANTONE Green 347C
Process Color C100%+Y100%



PANTONE Blue 286C
Process Color C100%+M90%

3. 심볼활용예(위치)

- 위치 : 패키지적용시 우측하단, 우측상단, 좌측하단에 적용
(가능한 우측하단에 적용할것)
- 그림 또는 배경색이 어두운 경우
- 심볼외각에 흰색 라인을 주어 배경과 구분시킨다.



3. 수산물검사법시행개정령

(대통령령 제16,392호, '99. 6. 8)
- 제14223호 -

수산물검사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1 수산물검사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물검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장소) ① 수산물검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당해 수산물을 생산·제조·가공 또는 보관하는 장소에서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

1. 검사대상 수산물이 소량인 경우
 2.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검사를 위하여 특수한 장비가 필요한 경우
 3. 병·충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장소를 지정하는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수산물 생산·가공시설의 등록사항 등)

-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생산·가공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2. 생산·가공시설의 대표자 성명 및 주소
 3. 생산·가공시설의 구조 및 설비
 4. 생산·가공품의 종류
 5. 기타 생산·가공시설의 냉장능력 및 동결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
- ②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항”이라 함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검사기관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한다.

1. 국립수산진흥원
2. 국립수산물검사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수산물 및 가공용수 등에 함유되어 있거나 묻어 있는 성분 또는 오염물질 등을 실험·분석할 수 있는 실험실을 갖추고 있을 것
2. 물리적·화학적 및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험·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수산물검사원이 2인 이상 있을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수산물검사원의 자격기준)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 검사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립수산진흥원 또는 국립수산물검사소의 수산물검사원은 1년 이상 수산직 또는 수산연구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어병기사·수산제조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식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자
- 나. 고등교육법 제2조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수산가공학·수산제조학·식품가공학·식품제조학·식품화학·미생물학·환경공학·어병학 또는 수산생물학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검사원의 임

명·위촉 및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자격전형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생산·제조·가공·운반의 중지명령 등)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의 생산·제조·가공 또는 운반을 제한·중지하거나 시정 또는 시설의 개선·보수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수출용 수산물의 제조·가공과정에서 위해물이 발견된 경우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위반한 경우
3.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해역(이하 "지정해역"이라 한다)에서 패류독소·대장균군 또는 방사능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해역의 위생관리기준 이상으로 검출된 경우
4. 수산물의 제조·가공시설이 침수된 상태에서 수산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5. 인체에 위해하거나 세균 또는 중금속에 오염된 물을 사용하여 수산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6. 지정해역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수산물을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등(이하 "협약등"이라 한다)의 당사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경우

제7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수산진흥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과 동항제2호의 수산물중 협약등의 이행을 위한 병·총해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의 채취·수거
2.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검사원의 임명
3.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합격증

명서의 교부

4. 법 제14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5.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합격의 취소
 6.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
 7.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및 조사·점검
 8.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
 9.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검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산진흥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다.
1. 법 제7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의 등록 및 변경신고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의 채취·수거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 및 수산물의 검사위탁. 다만,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의 검사에 한한다.
 4.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검사원의 임명·위촉
 5.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생략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합격증
- 명서의 교부
6.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처분의 요청
 7.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합격의 취소
 8.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
 9.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및 조사·점검
 10.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가공 또는 운반의 제한·중지, 시정 및 개선·보수명령
 11.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가공시설의 등록 취소
 12. 법 제2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가

공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 명령 및 이의 접수

13.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
14.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5.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 징수

③ 해양수산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해역에서의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 생산의 제한 · 중지, 시정 및 시설의 개선 · 보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 · 징수절차) 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 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수산물검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공무원의 자격을 가진 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산물검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③ (유효기간) 제4조제1항제1호와 제7조제1항 및 동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0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④ (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3.2 수산물검사법 시행령 개정 이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수화하고 국제협약 등의 이행을 위한 위생관리기준의 제정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산물검사법이 개정(1999. 2. 5. 법률 제5806호)됨에 따라 수산물검사원의 자격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3.3 주요골자

가. 원활한 검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모법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일정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을 수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영 제4조제2항)

나. 대학에서 식품가공학 · 식품제조학 및 미생물학 등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 등을 수산물검사원의 자격대상으로 추가하여 수산물검사의 내실을 기하도록 함(영 제5조제1항).

다. 외국과의 협약 이행을 위하여 수산물의 생산 · 제조 · 가공 · 운반의 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검사기준에 위반하거나 위생관리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으로 정함(영 제6조).

4. 위생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6.382호, '99. 6. 8)

- 관보 제14223호 -

위생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

선한다.

제명 “위생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위생사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중 “위생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생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생업무) 위생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소독업무와 보건관리업무를 말한다.

제3조(국가시험의 과목 등)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되,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중보건학
2. 환경위생학
3. 식품위생학
4. 위생곤충학
5. 위생관계법령(위생사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전염병예방법, 먹는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시행한다.

제6조의 제목 “(시험의 응시)”를 “(시험의 응시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내지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면허증의 교부) ①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법 제3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사본)
2. 위생업무에 종사한 경력증명서(법 제3조제1

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3. 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5. 사진 4매(응시원서 제출전 5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정면 상반신의 사진)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그 신청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한다.

1.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일 것
2.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일 것

제10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슬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등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 한다.
- ② (종전의 위생시험사의 교육과정) 법 부칙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이라 함은 국립보건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중보건학·환경위생학·식품위생학 및 위생곤충학에 대하여 실시하는 16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 ③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3항을 삭제한다.

4. 1 위생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위생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1999. 2. 8, 법률 제5842호)으로 위생사의 등급제와 위생시험사의 국가시험제도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종전에는 위생사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때에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생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 고려인삼 캐릭터 관리 요령

(농림부고시제1999-31호, '99. 6. 7)

- 관보 제14222호 -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우리나라 인삼의 성가 유지, 이미지 향상 및 해외시장에서 타국삼과의 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한 고려인삼 캐

릭터(이하 “캐릭터”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동 요령에 규정하지 않은 캐릭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1. “캐릭터”라 함은 정부가 인삼산업 진흥을 위하여 개발한 별첨1의 캐릭터 기본형 및 그 응용형을 말한다.
2. “인삼제품”이라 함은 국제상품표준분류(IPC)상의 제5류(인삼 캡슐 등), 제29류(홍삼, 백삼 등), 제30류(인삼차), 제31류(수삼), 제32류(인삼분말, 인삼농축액, 인삼주스), 제33류(인삼주)에 해당하는 인삼을 주원료로 한 제품을 말한다.

제 2 장 캐릭터 관리

제4조(관리의 위임) ①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캐릭터의 국내외 상표 및 라이센스의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2. 캐릭터 사용권 부여 및 사용자 관리에 관한 사항
3. 업체의 캐릭터 사용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4. 사용 조건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사용권 회수 및 의법조치에 관한 사항
5.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하는 기관(이하 “사용권 부여자”라 한다)에 위임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본 요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캐릭터의 사용자격·조건·범위·방법 등 기타 캐릭터 사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

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농림부장관은 캐릭터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3 장 사용관리

제6조(사용권 부여) 캐릭터의 사용권은 관리자가 제7조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개인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용권 부여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사용범위) 캐릭터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하되, 기타 용도로 사용코자 할 시는 관리자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1.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인삼제품의 포장 및 장식 단, 수입원료를 사용하거나 혼합한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인삼제품의 판매촉진 또는 홍보를 위한 기념품, 판촉물 등 각종 홍보물
3. 인삼제품의 대외적인 이미지 고양을 위한 각종 광고물, 서식류, 홍보책자, 리플렛, 유인물 등
4. 기타 관리자가 인삼제품의 대외적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삼제품 외에 공산품 등 타 제품에 대하여도 사용권 부여자와 협의를 거친 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허가할 수 있다.

제9조(사용방법) ① 캐릭터는 시각적 이미지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사용에 있어 임의로 형태나 색상 등을 변형해서는 안되며 사용시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한 고려인삼 캐릭터 표준메뉴얼에 따라 재생원고를 이용한 일반 제판방식이나 컴퓨터에 의한 출력방식으로 재생해야 한다.

② 이 요령에서 지정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도 임의로 해석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캐릭터를 사용코자 하는 자는 다음의 절차에 의거 사용허가를 득

하여야 한다.

1. 사용신청(접수자: 관리자, 사용권부여자)
 - 캐릭터 사용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자가품질검사서 또는 검사기관의 품질검사서
2. 심사(심사자: 관리자, 사용권부여자)
3. 사용승인서 및 캐릭터 자료 교부(교부자: 관리자, 사용권부여자)
 - ② 제1항과 관련된 서식 및 심사기준은 관리자가 사용권부여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하여야 한다.
 - ③ 관리자는 인삼산업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삼류 검사기관장이 캐릭터가 부착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확인검사 또는 국내산 인삼의 사용실태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삼산업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필한 제품에 대하여는 캐릭터 사용신청서 접수만으로도 승인할 수 있다.

제11조(정계)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시 관리자는 사용권 부여자와 협의하여 캐릭터의 사용권을 즉각 회수하여야 한다.

1. 휴·폐업
2. 타국산 인삼원료를 사용하거나 타국산 인삼 제품에 사용했을 때
3. 관리자의 허락없이 사용범위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
4. 한국 인삼제품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행위를 했을 때
5. 기타 사용권을 회수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때
 - ② 기타 캐릭터 사용자가 상표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관리자 또는 사용권부여자는 동법에 의거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관리자는 인삼산업 진흥을 위하여 사용권 부여자와 협의를 거친 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일정 금액의 캐릭터 사용료를

정수할 수 있다. 단, 캐릭터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정한 일정기간 동안은 사용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사후관리) ① 캐릭터 사용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이전년도의 사용실적을 관리자 또는 사용권부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매년 3월말까지 사용권 부여자 및 사용자로부터 캐릭터 사용실적을 취합하여 “고려인삼 캐릭터 사용 실적표”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중 개정

(농림부고시제1999-29호, '99. 5. 29)

- 관보 제14215호 -

제3조제1항제1호의 표의 1일 평균도축실적항 중 “100천수 이상 또는 정부지원계열화업체”을 “100천수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HACCP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HACCP 적용대상작업장의 영업자(HACCP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작업장의 영업자를 포함한다). HACCP팀 구성원 및 HACCP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훈련은 검역원장 또는 검역원장이 지정하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또는 축산물위생관련단체(이하 “HACCP 교육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

③ 검역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HACCP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또는 지정

을 취소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HACCP 교육기관은 교육·훈련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교육·훈련 실시 결과를 교육·훈련을 마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역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중 “농림부장관”을 “검역원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검역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HACCP 적용을 위한 자체실시기간 중 영업자의 교육·상담·지도 등의 지원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속 전문가로 하여금 교육·상담·지도 등을 실시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검역원장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HACCP 가 적용작업장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함께 HACCP 적용 작업장 지정관련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검역원장이 HACCP 적용 작업장을 지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HACCP 적용 작업장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 농림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농림부장관”을 “검역원장”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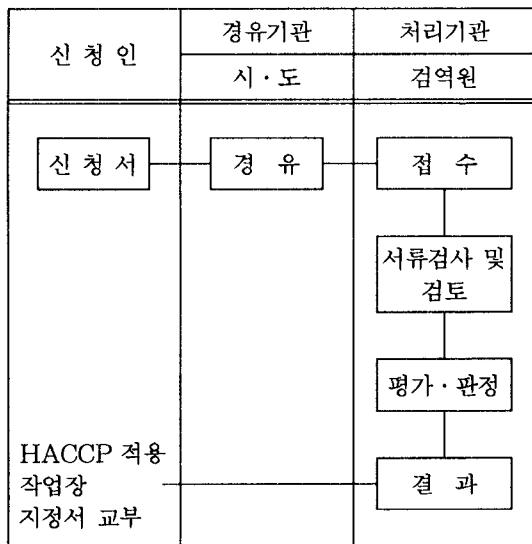
① 검역원장 및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HACCP 적용 작업장에서의 HACCP의 적절한 시행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할 수 있다.

1. HACCP 계획
2. 중요관리점의 허용 한계치
3.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4. 개선조치
5. 중요관리점에 대한 기록
6. HACCP 실시기록
7. 축산물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료의 검사
8. 작업현장에 대한 관찰기록

제15조제1항제2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고 제2호를 제3호로 한다.

② 법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완화

제16조 중 “농림부장관”을 “검역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농림부장관”을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장”으로 한고,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12조”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11조”로 하고, 업무흐름도를 아래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농림부장관”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라 한다.

별표2중 “농림부”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라 한다.

7. 자가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대상품목 변경지정내역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 1999-69호, '99.6.19)
- 관보 제14233호 -

1. 건명 : 자가품질검사대상품목변경지정

2. 변경지정 내역

○지정번호 : 제9호

○기관명칭 : (주)에이엔드에프

○대표자 : 정시섭

○검사실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690-10 시화공단 5 바동
809호

○검사업무 변경내역

- 변경전 : 식품(과자류, 면류, 조미식품류, 김치 절임식품류, 기타 식품류) 식품첨가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에 한함.
- 변경후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 · 포장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에 한함.

3. 검사업무 개시일자 : 1999년 6월 18일

8.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입법 예고

(보건복지부공고 제1999-62호, '99.5.18)

- 관보 제14206호 -

8.1 개정이유

국민의 일상적인 대중예술 향유 수유가 증가함에 따라 유홍종사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대중예술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일부 규정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8.2 주요골자

가.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안)

- 1) 댄서, 가수 및 악기를 다루는 자, 무용을 하는 자, 만담 및 곡예를 하는 자, 유홍사회자 등 무대에서 공연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손님과의 직접적인 유홍접객행위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이들의 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함.
- 2) 무대장치 · 조명시설 · 음향시설 등을 유홍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함.

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 1) 동일영업자가 동일인이 소유한 같은 건물 또는 인접 건물 내에 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

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자 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2)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식품점객영업자는 방음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 3) 공연을 하고자하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 영업자는 영업장내에 객석과 구별되는 무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객실 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함.
- 4)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영업장에는 자막용 영상장치 및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
- 5) 일반음식점의 객실내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
- 6) 단란주점에 우주볼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
- 7)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 영업자는 무대시설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거나 공연을 하는 행위를 조장 또는 묵인하지 못하도록 함.
- 8) 남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자리를 함께 하여 술을 마시거나 술을 마시는 것을 도와 주거나 또는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8.3 의견제출

이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1999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보건정책국장, 503-758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를 참고하거나 식품정책과(02-503-7583, FAX:503-75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영양사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08호, '99.5.14)

- 관보 제14203호-

영양사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영양사의 사망 또는 실종신고시 그 호주·세대주 등으로 하여금 사망(실종)신고서에 영양사면허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그 신고실적이 없고 관련 행정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망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망 등 신고에 관한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10. 국내외 공인검사기관과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인정기준 및 절차 중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 1999-26호, '99.5.7)

- 관보 제14197호-

“국내외 공인검사기관과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인정기준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내·외 공인검사기관과 검사증명서 인정기준 및 절차”를 ‘국내외 공인검사기관과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 증명서 인정기준 및 절차’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인정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입식품 등에 대한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 및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정신청 대상 등) ① 국내외공인검사기관으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검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 공인검사기관은 법 제18조 및 시행규칙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

2. 국외 공인검사기관은 수출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수출국 정부”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검사기관이거나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

- ② 제1항 제1호의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이 고시에 의한 국내공인검사기관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고, 국내공인검사기관의 인정은 법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신청 및 인정 등) ①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 공인검사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신청자의 수출국 정부를 경유하거나 직접 제출할 수 있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실여부를 직접 현지 확인하거나 또는 대사관에 확인 요청할 수 있으며, 수출국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검사기관 등에 대하여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외 공인검사기관으로 인정한 때에는 그 인정사항을 당해 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의 인정기준 및 범위 등) ① 검사항목의 시험법은 우리나라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서 규정한 시험법

에 따라 시험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CODEX규정 · AOAC · PAM의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수 있으며, 이외의 시험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②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이 발행하는 검사성적서는 당해 기관에서 사용하는 서식에 의할 수 있으며,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항목, 시험법, 시험결과치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③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이 발행하는 검사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준하여 발행하여야 하며,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이하 “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이라 한다)은 수입자가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제2항 또는 제3항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정밀검사에 갈음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1. 수입자가 제출한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가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정밀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시험법대로 검사하지 않거나 제출한 시험법이 검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6에 의한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상의 위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가 원본으로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인정사항의 변경승인 등) ① 국외 공인검사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제 즉시 통보하고 변경내역에 대하여 식품의약 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국외 민간검사기관의 경우 수출국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사항의 변경시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한 검사대상 식 품등의 변경시

-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변경사항 을 문서 또는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인정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외공인검사기관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외공인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허위로 발급 한 경우

2. 제6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과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인정신청이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11.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 (안) 입안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1999-19호 '99. 5. 13)

-관보 제14202호-

11.1 개정취지

냉동식품 및 빙과류 제품을 HACCP 적용 대상 품목으로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별지 제1호 서식]

| 국외공인검사기관 인정 신청서 | | 처리기간 60일 |
|---|---------------|-------------|
| 신청인 | | |
| 기관명칭 | | |
| 소재지 | 전화번호 FAX번호 | |
| 검사대상 식 품 등 | | |
| 국내외공인검사기관과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인정기준 및 절차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공인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서명(인) | |
| 수수료 없음 | | |
| ○ 구비서류 | | |
| 1. 일반현황(기능 및 연혁) 2. 조직 및 기구(조직도 포함) 3. 주요사업내용 4. 검사실적(최근 3년간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농·축·수산물로 구분작성) 5. 주요실험장비현황 6. 시설현황 7. 검사인력현황(검사원 숙련기간 포함) 8. 수출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서류(수출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검사기관에 한함) | | |

65654-00211민

'99. 2.27 승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2호 서식]

| 검사증명서 | | | |
|---|--------------|--------|--------|
| 발행번호 | 접수일자 | | |
| 발행국가 | 검사일자 | | |
| 검사의뢰자 | 회사명 | | |
| 주소(또는 소재지) | | | |
| 전화번호 및 FAX번호 | | | |
| 성명 | 회사명 | | |
| 수주(또는 소재지) | | | |
| 입자 | 전화번호 및 FAX번호 | | |
| 제품명 | 수입량(총중량) | kg | 포장단위 |
| 산적해·포항 | | 운송방법 | |
| 제조번호 | | 제조년월일 | |
| 검체명(제품명) | | 유통기한 | |
| 검체채취지역 | | 검체채취일자 | |
| 시험항목 | 시험방법 | 시험기준치 | 시험결과파치 |
| | | | 비고 |
| 상기 기체사항이 사실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주소 : 검사기관장 성명 : 검사기관장 성명 : | | | |
| 31311-119111 '96. 4. 10 통체 | |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m ² | | | |

작인

(사인)

11.2 주요 개정내용

- 냉동식품 및 빙과류제품 HACCP 적용대상 품목 확대
 - 대상품목 : 냉동식품 중 기타 빵 및 떡류·면류·일반가공식품 중 기타 가공품
 - 품목별 평가사항 신설

| 입안예고(안) | 견의의견(안) | 이유 |
|---------|---------|----|
| | | |

개 서면 또는 FAX(02-388-639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11.3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안예고(안)에 대한 구체적 사유 및 관련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1999년 6월 2일 까지 다음 양식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농림부고시제1999-23호, '99. 5. 11)

- 관보 제14193호 -

제3. 축산물시험방법. VIII 미생물 시험용 시액 및 배지, 2. 배지, 호. Plate Count Agar with Brom Cresol Purple(BCP첨가 평판측정배지)

| 현행 | 개정 |
|--|---|
| Yeast extract 2.5g Peptone 5.0g Dextrose 1.0g Tween 80 1.0g L-cystine 0.1g Agar 15.0g | (좌동) (좌동) (좌동) (좌동) L-cysteine 0.1g (좌동) |
| 위의 성분에 종류수를 가하여 1,000ml로 만들고 가열 용해한 다음 pH 6.0~7.0으로 맞춘다. 여기에 BCP(Brom Cresol Purple)은 0.004 ~ 0.006%가 되도록 가하고 15파운드(121°)로 15분간 고압증기 멸균한다. | 위의 성분(다만, 종균에 따라 적정 Peptone을 사용하여야 함)에 종류수를 가하여 1,000ml로 만들고 가열 용해한 다음 pH 6.8~7.0으로 맞춘다. 여기에 BCP (Borm Cresol Purple)은 0.004~0.006%가 되도록 가하고 15파운드(121°)로 15분간 고압증기 멸균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